

경기도 공고 제2020-1903호

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.

2020. 10. 26
경 기 도 지 사

1.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

구분	위치	면적
토지거래허가구역	도내 수원시 등 23개 시군	5,249.11km ²

※ 단, 허가대상은 “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·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”에 한한다.

2. 허가구역 지정 기간 : 2020년 10월 31일 ~ 2021년 4월 30일(6개월)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도시지역 내 면적(m ²)		도시지역 외 면적(m ²)	
- 주거지역	18 초과	- 농지	50 초과
- 상업지역	20 초과	- 임야	100 초과
- 공업지역	66 초과	- 기타	25 초과
- 녹지지역	10 초과		
- 용도 미지정	9 초과		

※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%~300%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

4.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

*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

5. 시·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표

연번	구분	지정면적(km ²)	비고
-	합계	5,249.11	
1	수원시	121.09	
2	고양시	268.09	
3	용인시	591.26	
4	성남시	141.63	
5	부천시	53.45	
6	화성시	697.77	
7	안산시	155.73	
8	남양주시	458.12	
9	안양시	58.47	
10	평택시	458.24	
11	시흥시	138.66	
12	파주시	673.23	
13	의정부시	81.54	
14	김포시	276.61	
15	광주시	430.99	
16	광명시	38.53	
17	군포시	36.42	
18	하남시	92.99	

경 기 도 보

제6601호

2020. 10. 26. (월)

19	오산시	42.71	
20	양주시	310.39	
21	이천시	-	지정 제외
22	구리시	33.33	
23	안성시	-	지정 제외
24	포천시	-	지정 제외
25	의왕시	53.99	
26	양평군	-	지정 제외
27	여주시	-	지정 제외
28	동두천시	-	지정 제외
29	가평군	-	지정 제외
30	과천시	35.87	
31	연천군	-	지정 제외

6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

